

## 한변, 헌재에 공수처법 신속처리 촉구

- 재판 지연은 그 자체로 위헌이자 직무유기 -

일 시 : 2020. 11. 27(금) 10:30

장 소 : 헌법재판소 앞

한변은 2020년 5월에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국민의 힘은 그에 앞서 2월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10개월,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헌법재판소는 그 위헌여부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공수처법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률로서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옥상옥(屋上屋)의 초법적 수사기관이다. 그 출범자체가 1+4 협의체에 의해 패스트트랙이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경로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지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나 공수처법에 내재한 위헌성 노정(露呈)으로 갈등을 빚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으로 시행도 되지 않은 법률을 압도적인 의석수로 또 개정함으로써 공수처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로 구성되었다 하여 공정성과 권위를 의심받고 있는데 재판 지연은 그 자체로 그 의혹을 증폭시킬 것이다. 헌법질서의 혼란까지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서까지 위헌심판을 끄는 것은 헌정질서 수호자로서의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3개월 만에 끝냈던 헌법재판소가 10개월째 붙들고 있는 것은 어노모로 보나 정당화 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는 법무부장관에 의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로 임계점을 넘고 국민들은 저항권 행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다른 어느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위헌성을 내포한 이 사건 공수처법의 등장이 큰 원인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한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누락처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11. 27. 심판촉구 의견서 제출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시까지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0. 11. 2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